

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및 계약 일정 안내

■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(당첨)유형별 자격검증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| |
|---------|---|
| 대상 |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(※예비입주자는 별도 안내 예정) |
| 제출기한 | 2021. 12. 20. (월) ~ 2021. 12. 24. (금) 10:00 ~ 17:00까지 |
| 제출장소 |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건본주택 ※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 |
| 자격검증 서류 | 특별공급 유형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따라 자격검증 서류가 상이 하오니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유의사항 |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,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(계약체결 이전)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
■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

당첨 동·호수의 공급금액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| | |
|------|---|
| 대상 |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|
| 체결기간 | 2021. 12. 28. (화) ~ 2021. 12. 30. (목) 10:00 ~ 16:00까지 |
| 체결장소 |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건본주택 ※ 사전방문 예약제로 접수 |
| 구비서류 |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철원 아데나 퍼스티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유의사항 |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
■ 계약 시 구비서류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 기준 | 확인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필수 | 추가 해당 자 | | | |
| 공통 | ○ | |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| 본인 | APT 및 유상옵션 계약금 10%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용도 : 주택공급계약용 (본인 발급용) ※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|
| | ○ | | 주민등록증 | |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| |
| | ○ | | 인감도장 | | |
| | | ○ | 복무확인서 | 해당자 |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. (10년 명시) ※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|
| | | ○ |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| | |
| | | ○ |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| | |
| 제3자 계약시 | ○ 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청약자 |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(본인 발급용) |
| | ○ | | 주민등록증, 인장 | 대리인 |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|

인지세 납부 안내

■ 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□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 [관련법령] 인지세 법 제1조,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
- 과세세액 : 15만원
- 납부기한 및 방법 : [공급계약]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□ 분양계약전 수입인지 구매 방법

- 분양계약 진행시 필수 서류이며 구매방법 확인 후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.
- 수입인지 구입처
 - 온라인 구매처 : 수입인지사이트[www.e-revenuestamp.or.kr] 전자수입인지 구매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 - 오프라인 구매처 : 우체국,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(구비서류:신분증 / 현금결제가능, 카드결제불가)

□ 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 * [관련법령]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

- 3개월 이내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300%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

(1) www.e-revenuestamp.or.kr 접속

(2)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(3) 비회원 or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(4) 납부정보입력

- ①용도 : 인지세납부
- ②과세문서 종류 :
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금액 : 150,000원
- ④건수 : 1건
- ⑤확인 및 납부

철원 석미아데나 퍼스티어 일반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

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방문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 |
| ○ | | 신분증,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, 세대원 |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피부양 직계존속이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아니한 경우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피부양 직계비속 |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피부양 직계비속 |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 |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○ | | 무주택 소명서류 | 해당주택 |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필요서류 제출 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○ | | 당첨사실소명서류 | 본인 | 당첨사실 소명서류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) |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※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철원 석미아데나 퍼스티어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신혼부부)

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방문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 |
| ○ | | 신분증,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, 세대원 |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혼인신고일 확인 |
| ○ | |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(상세) |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|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※ 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] |
| ○ | | 소득증빙서류 | 세대원 |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표1참조)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) ·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자녀 |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|
| | ○ | 기본증명서 (상세) | 자녀 |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|
| | ○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·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|
| | ○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입양의 경우 |
| | ○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 |
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**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**

| 해당자격 |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일반근로자 | 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 | * 해당직장, 세무서 |
| | 신규취업자 | 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재직증명서 | * 해당직장 |
| 자영업자 |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| 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 | * 세무서 |
| |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| *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| 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 |
| | 신규사업자 | 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, 사업자등록증 | 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 |
| | 법인사업자 | 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등기부등본 | * 세무서 |
| | 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 | 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| * 세무서, 해당직장 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| * 수급자 증명서 | * 동사무소 |
| 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 | | 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| * 해당직장 |
| 무직자 | | * 비사업자 확인 각서 | * 계약시 작성 |

■ **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**

·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
| 해당자격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*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| * 해당 직장,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 |
| 자영업자 | *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| *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 |

■ **자산보유기준**

| 구분 | |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3억 3,100 만원 이하 | 건축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
| |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토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종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철원 석미아데나 퍼스티어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생애최초)

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방문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서류유형 필수 | 추가 (해당 자)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| | | | |
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 |
| ○ | | 신분증,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, 세대원 |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혼인사실여부확인 |
| ○ | | 소득증빙서류 | 본인 및 세대원 |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표2참조),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 전의 5개년도 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) ·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|
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자녀 |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|
| | ○ | 비사업자 확인각서 | 본인 | 비사업자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 |
| | ○ | 부동산소유현황 | 본인 및 세대원 | 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|
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※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| 해당자격 |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일반근로자 | 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, 재직증명서 | * 해당직장, 세무서 |
| | 신규취업자 | 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 재직증명서 | * 해당직장 |
| 자영업자 |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| 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 | * 세무서 |
| |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| *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| 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 |
| | 신규사업자 | 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, 사업자등록증 | *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 |
| | 법인사업자 | *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등기부등본 | * 세무서 |
| | 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 | 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| * 세무서, 해당직장 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* 수급자 증명서 | * 동사무소 | |
| 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 | 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| * 해당직장 | |
| 무직자 | * 비사업자 확인 각서 | * 계약시 작성 | |

■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

·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

| 해당자격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*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| * 해당 직장,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 |
| 자영업자 | *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| * 세무서, 건강보험공단 |

■ 자산보유기준

| 구분 |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3억 3,100 만원 이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
|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

철원 석미아데나 퍼스티어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다자녀가구)

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방문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 |
| ○ | | 신분증,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, 세대원 |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자녀 |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|
|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자녀 |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|
| | ○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본인 | 여성가족부의 「 한부모가족 지원법 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|
| | ○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·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|
| | ○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입양의 경우 |
| | ○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임신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 |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철원 석미아데나 퍼스티어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노부모부양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방문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 |
| ○ | | 신분증,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, 세대원 |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○ | |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피부양 직계비속 |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[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] |
| ○ | 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자녀 |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|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철원 석미아데나 퍼스티어 특별공급 사전제출서류 안내 (기관추천)

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25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접수 방문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○ | |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본인 | 접수 장소에 비치 |
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|
| ○ | | 인감증명서 또는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 | 본인 |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 2부 (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) |
| ○ | | 신분증, 인감도장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|
| ○ |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|
| ○ 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, 세대원 | 해외장기체류여부 체크,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|
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 |
|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| 배우자 |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|
| | ○ |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| 본인 |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|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